



〈특집Ⅱ : 축산업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〉

■ 환경부(안)

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

I. 추진배경

- 오·폐수시설은 엄격 관리되는 반면, 가축분뇨는 상대적으로 느슨
 - 발생량은 오·폐수의 1%에 불과하나, 부하량은 37.0% 차지
 - * 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 수의 90배
 - 그간 1차 산업에 대한 미온적 규제 정책이 주된 원인
- 이에 따라 하수도 보급률('10)은 90%, 가축분뇨공공처리율은 10%수준 불과
 - 축산업이 대형화·기업화되고 있어 공장폐수 수준의 관리 필요

II. 현황 및 문제점

▣ 발생 및 처리현황

- (발생) 15만 농가에서 207백만 마리 사육, 134.1천톤/일 발생

- 발생량 : 돼지 57(43%), 소·말 38(28%), 젖소19(14%), 닭·오리 20(15%) 등

- (처리) 퇴액비(88%), 정화처리(10%), 해양배출(3%)

발생량	자원화			정화처리			해양 배출
	계	퇴비	액비	계	공공	농가	
134.1	117.4	107.3	10.1	13.7	9.8	3.9	3
(100)	(87.6)	(80.0)	(7.6)	(10.2)	(7.3)	(2.9)	(2.2)

< 가축분뇨 발생량 >

(천 톤/일)

구 분	돼지	젖소	한우	닭/오리	합계
발생량	57.0	19.2	37.7	20.2	134.1
비율(%)	43%	14%	28%	15%	100%

<관리체계 미흡>

-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가축 사육
⇒ 퇴액비 과다로 환경용량 초과
- 불법 운영시설이 30%에 이르나, 폐쇄 조치 부재
- 가축분뇨의 배출, 수집·운반, 처리과정

이 불명확

〈처리방법의 한계〉

- (자원화) 자원화를 유도하고 있으나, 검사방법, 절차 등 없어 가축분뇨와 퇴비·액비 구분이 모호
 - 가축분뇨 유출 시 처벌, 반면 퇴·액비 유출 시에는 처벌규정 부재
 - 비료가치 제고 보다는 가축분뇨 처분의 방면으로 이용
 - 퇴비 품질이 낮아 농가 사용 기피로 축사 주변 및 논경지에 야적
 - 액비 성수기(봄/가을) 이외, 비수기 (여름·겨울)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무단 투기
 - 장마철, 우기 등을 틈타 하천 또는 농경지 등에 무단방류
- (개별농가 정화시설) 투자에 소극적이며, 전문운영인력 부재
 - 방류수질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, 이마저도 희석 등의 방법을 다수 사용
- (공공처리시설) 자원화보다는 정화처리(78개중 74개소) 위주로 설치·운영
 - 정화시설은 기술적 한계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농(尿)위주로 수거·처리
 - 축분을 처리해야 하는 농가는 인근 부지 및 논밭에 야적 방지
 - 지자체는 반입농가에 낮은 처리수수료를 징수, 적자분은 지자체예산으로 보전

III.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

〈기본목표〉

- ◆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 강화
- ◆ 발생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 과정 관리 강화
- ◆ 2020년까지 공공처리시설 처리율 50% 달성
- 약 1조7천억원을 투자, 100개소를 신·증설

1. 사전예방 대책 강화

- ☞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
- 상수원보호지역, 특별대책지역, 수변 구역 등을 「가축사육제한구역」으로 지정·고시(필요시 환경부장관이 강제)
 - * 팔당특별대책지역(소·돼지) : 26만 두('05) → 32만두('07) → 37만두 ('09)
-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, “과밀사육지역”을 추가
 - 시·군별 환경부하·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하여 적정 사육두수의 일정규모 이상 초과한 지역을 “과밀사육지역”으로 고시
 - *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제도 도입 연구사업 실시 세부추진계획 마련

☞ 환경성 검토 및 방목지 관리강화 등

- 일정규모 이상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



성 검토 강화

- 사전환경성검토 : 축사 5천m²이상, 환경영향평가 : 처리용량 100톤/일 이상
- 신고·허가대상이상 방목지역에는 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의무 부여
- 환경오염이 현저한 지역에 대한 가축 분뇨 등 실태조사 실시

2.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강화

■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

- 가축분뇨의 배출, 수집·운반, 최종처리 까지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
 - 시범사업(2013) : 양돈농가, 재활용 신고자,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상
 - * 2012년 계획 수립, 2013년 시범사업(제주도 등 3~5개 시·군)

■ 정화시설의 방류수 기준 강화

- T-N의 방류수 기준으로 2~3.4배 강화 등

구 분	항 목	특정지역		기타지역	
		현 행	개 선	현 행	1단계
허가대상	BOD	50	40	150	120
	SS	50	40	150	120
배출시설	T-N	260	120	850	250
	T-P	50	40	200	100
신고대상	BOD	150	120	350	150
	SS	150	120	350	150
배출시설	T-N	850	250	-	400
	T-P	200	100	-	100

※ 신설되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 적용(기존시설은 2년간 유예)

■ 처리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강화

- 침출수 외부유출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
- 가축분뇨, 퇴액비 보관장소 기준 설정

■ 생산된 퇴액비의 관리

- 퇴비·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및 절차 등 마련
 - 부적합 퇴액비 생산시 별칙 신설(과태료 1천만원 이하)
- 퇴비·액비의 공공수역 유출시 고발조치

■ 무허가,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

- 무허가, 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신설, 미이행 시 폐쇄명령
 -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(3억원 이하) 신설
- ※ 축사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
- 기준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시정명령, 개선명령 등 신설

3. 영업관련시설 관리 강화

■ 재활용 시설 및 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

- 재활용시설의 설계·시공 강화
 - * 등록된 업자만 설계·시공토록 변경
- 퇴액비는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토록 규정
- 재활용신고자가 개선명령 미행시 반입처리 금지 및 폐쇄명령 신설

▣ 처리업 허가대상 명확화

- 설치가 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, 관리 강화
- 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관리 개선
 - 영업허가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도록 하고, 준공검사 실시
 -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허용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등을 명시
 - 전자인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신설(경고 또는 영업정지, 허가취소 등)

4. 공공처리시설 확충

〈기본방향〉

- ◆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
- ◆ 지자체설치 중심에서 지역농협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
- ◆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순환형 시범사업 추진
- ◆ 돼지분뇨와 함께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은 소의 분뇨처리 강화
- ◆ 한센인 등 영세농가의 분뇨처리 지원 확대(2020년까지)
⇒ 100개소 신·증설(공공처리시설 보급률 50% 상향)

▣ 지역농협의 시범사업 추진

- 농협이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시범사업 추진
 - 국고 70%, 시·도(시·군) 10%, 지역협동조합 20%

- 논산·안동·영주·화성시에 대해 2012년도 시범사업 실시 중(800억원)

- “가축분뇨법” 개정, 사업추진 근거규정 마련
- 2020년까지 30개소 국고지원 예정

▣ 한국환경공단의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

- 발생부터 처리 및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시범사업
- 농가의 분뇨 외부 무배출, 생산된 퇴액비의 농가보급, 처리공법의 다양화 등
- 시범사업을 걸쳐 공공처리시설 모델의 지자체 보급 확대
- ※ ‘12년 1개소 및 ’13년 3개소 지원, 2020년까지 30개소 설치지원

▣ 지자체 추진사업 관리강화

- 수익성이 담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 강화
- 특히, 한센인 가축사육정착촌 우선 지원
- 2020년까지 40개 처리시설 설치·추진
 -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소의 분뇨 공공처리

▣ 가축분뇨 관리 조직 강화

- 가축분뇨 관리 T/F 구성·운영
 - 「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」과 일괄 관 추진
- 한국환경공단 내 가축분뇨관리팀 구



성·운영('12년 말 부터)

-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공단에 법적기능 부여

IV. 향후 추진계획

○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

- 입법예고,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('12.5~7)
- 법 :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제출 ('12.8), 시행규칙 : 개정완료('12.8)

○ 지역단위통합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('12~13)

- 1차 시범사업('12년 안동 등 4개소)

및 2차 시범사업('13년 4개소 추진)

○ 한국환경공단의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

- 환경순환형 사업을 선정(2013년도 3~4개소)

○ 가축분뇨 관리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

- 양분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13년, 농식품부 협조)

○ 지도점검 강화

- 지자체 환경·축산부서 및 환경감시단과의 합동점검 정례화(분기 1회)
- 주요 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특별관리 ■